

유학생지원센터운영규정

5-1-75

규정번호	5-1-75
제정일자	2025.9.29
최근개정	2026.7.20
개정차수	1차 개정
관리부서	유학생지원센터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유학생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센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고, 학업 및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한다.

② 센터는 외국인 유학생의 고충 및 상담, 적응 지원, 생활 안내 등 학생 복지 전반을 지원한다.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특임교수,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반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제4조(사업) 센터는 다음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유학생 전담학과 학사관리 및 운영 지원
2. 산학협력 기반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연계 및 현장실습 지원
3.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(어학, 이력서 작성, 면접 코칭 등) 운영
4. 유학생 비자(체류) 관리(거주, 보험 등) 및 행정 지원
5. 외국인 유학생 대학생활(장학) 안내 및 학사(학업) 상담 지원
6. 조기적응지원센터 운영(한국문화 및 생활적응 프로그램 운영)
7. 긴급 상황(질병, 안전, 법률 등) 발생 시 대응 지원 체계 운영
8.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 및 자치활동 지원
9. 외국인 유학생 지원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
10. 유학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
11. 기타 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관련된 사업

[본조개정 2026.7.20.]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둔다

1. 유학생지원센터 규정 및 지침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2. 유학생지원센터 운영 및 주요 정책 수립
3.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1-75 유학생지원센터운영규정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하되,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유학생지원센터 팀장으로 한다.
-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운영세칙) ① 운영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- ② 이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)